#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25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이상식·최민희·김현정

김우영 · 홍기원 · 이병진

손명수 · 민병덕 · 어기구

윤준병 • 박수현 • 박홍배

임미애 · 조인철 · 모경종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 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.

이와 관련하여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'응급의료정보통신망'이 구축·운영되고 있는데,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

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 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"해당 의료기관에"를 "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"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 단 중 "의료기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소방청장등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 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| 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)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수집) ① -----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 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 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 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-----보건복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, 사망여 지부장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 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 의 장에게-----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 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지부장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-② 소방청장등은 「응급의료에 <신 설> 관한 법률 | 제15조에 따른 응 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 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